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9.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개척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개선(안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 1) 위원 중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토부 공무원 및 전담기관 직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투명성 제고
- 2) 전담기관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 자격 기준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여 전문성 제고
- 3) 위원의 이해충돌사유를 규정하고, 위원이 이해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해촉 등)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성 제고
- 4) 위원회는 대리참석 불가 및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위원회 개최 전에 통보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5) 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
토록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 투명성 제고
나.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기간 명확화(안 제7조)

1)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최대 지원기간을 신청일로부터 10개월로 규정
다. 훈령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5조 신설)

1)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35, 4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kr
- 팩스 : 044-201-5547